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인·허가 의제대상 추가〉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637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인·허가 의제대상 추가	2
2. 부칙	9
IV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는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인·허가 의제대상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하천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1. ~ 19.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③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6조¹⁾²⁾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³⁾(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이 고시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정비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 제6조⁴⁾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⁵⁾에

1) 「연안관리법」

제2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중략>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2) 인·허가 의제 대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은 [참고 1] 참조

3) 「연안관리법」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4)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⁶⁾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⁷⁾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별도의 협의 및 허가 절차로 인해 정비실시계획 수립 후에도 착공이 수년간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6)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후략>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략>

첫째, 현재 지연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6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총 3건(① 동해 한섬지구 ② 양양 정암지구 ③ 속초 영랑·동해안2·장사지구⁸⁾)으로, 세 건의 사업은 모두 어촌계의 어업 피해보상 요구와 사업추진 반대로 공사의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며, 개정안이 추가하고자 하는 인허가 의제 대상 절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추가하고자 하는 인·허가 의제 대상의 연안정비사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천법」상 하천구역⁹⁾은 「연안관리법」상 연안¹⁰⁾에 포함되지

8)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지연 사유는 [참고 2] 참조

9)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0)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않으므로, 연안정비사업에서 「하천법」상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인·허가 의제 대상의 필요성은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법령 및 사업 여건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향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안정비사업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하천구역에 인접하여 시행되는 연안정비사업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현시점에서 해당 협의·허가의 적용 사례가 제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장래의 제도 변경에 대비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미리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연안정비사업의 특성상 해당 법률(「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협의·허가 적용 사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관련 인·허가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비한
다는 측면에서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하천법」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연재해대책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양 부처 모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 시행일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 정비 및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적용례는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참고로, 「연안관리법」 제25조제4항¹¹⁾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변

11) 「연안관리법」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하거나 승인·변경승인하였을 때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시행일은 관련 절차 정비 및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례는 적용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²⁾

문 의 처

02)6788-5427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

「연안관리법」

제2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4. 삭제 <2010. 4. 15.>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참고 2 연안정비사업 지연 사례

□ (지연사유) 사업대상지 인근 어촌계의 사업 추진 반대에 따른 협의 기간 소요로 사업 지연

* ① 동해 한섬지구 ② 양양 정암지구 ③ 속초 영랑·동해안2·장사지구

○ 기본·실시설계 시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해당 지자체, 인근 주민 등) 이해·설득에 노력하였으나 어업권 포기 동의 협의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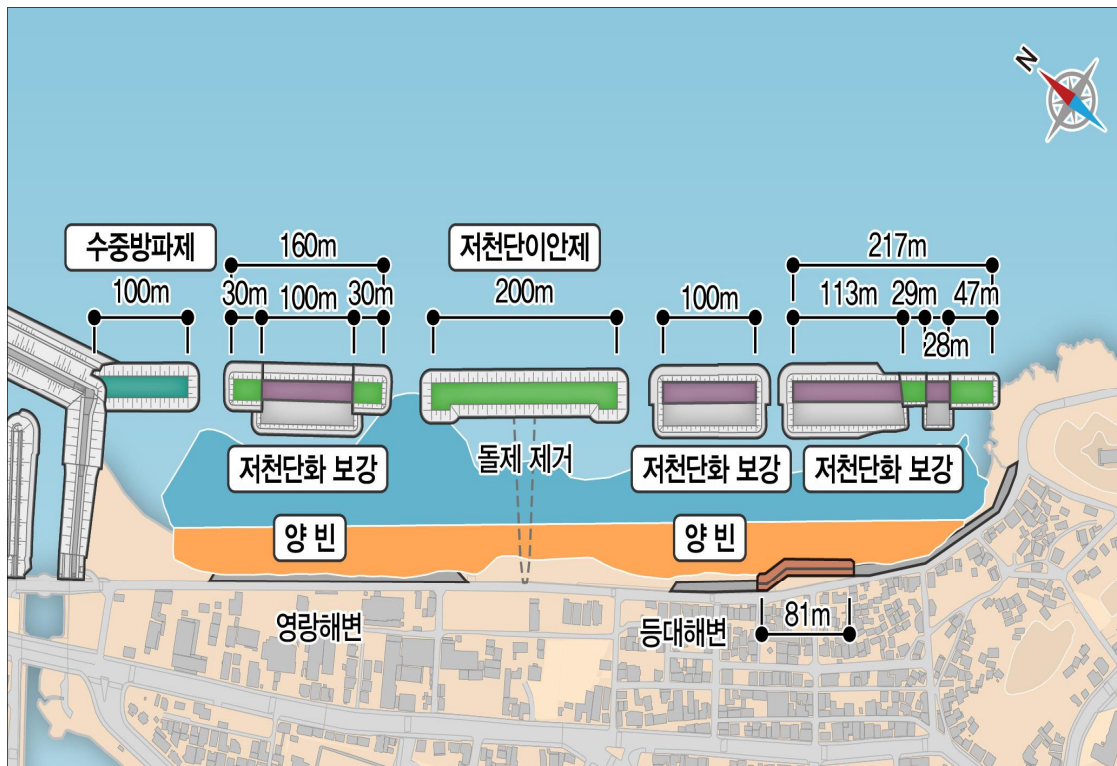
⇒ 연안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및 어촌계 등과 사업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필요

□ (지연사업) 강원 속초 영랑동해안2·장사지구 등 3건

○ (속초 영랑동해안2·장사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25.9.) 후 사업지 내 어업권 동의 협의 후 사업 추진 예정

- 마을어업권 등 어촌계로부터 어업 피해보상 요구와 사업추진 반대로 공사 발주 지연

* (금액/내용/기간) 433억원 / 수중방파제, 양빈 등 / '24~'29



- (양양 정암지구) 기본설계('24.6.)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25.12.) 후 사업 추진 위한 관계기관 및 어촌계 지속 협의 추진

- 마을어업권 등 어촌계로부터 어업 피해보상 요구와 사업추진 반대로 공사 발주 지연

* (금액/내용/기간) 233억원 / 도류제, 돌제 등 / '23.~'29.



- (동해 한섬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25.8.) 후 사업 추진 위한 관계기관 및 어촌계 지속 협의 추진

- 마을어업권 등 어촌계로부터 어업 피해보상 요구와 사업추진 반대로 공사 발주 지연

* (금액/내용/기간) 75억원 / 양빈 등 / '24. ~ '27.

